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복권 관련 유사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

■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85호)

2026. 7.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복권 관련 유사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안 제5조의3 및 제34조 제1항제4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연욱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3. 11.

다.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발행사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복권발행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 국민체육진흥, 근로복지진흥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한편, 사행산업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서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복권의 발매·구매대행 행위 등의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부재하여 복권 유사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복권 관련 유사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안 제5조의3 및 제34조 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 <신설>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설> · (이하 생략)	○ 유사행위의 금지 등 -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벌칙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이하 생략)

현행법상 복권이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 제2조¹⁾ 각 목에 따른 인쇄복권(추첨식·즉석식), 전자복권(추첨식·즉석식), 온라인복권(로또), 혼합형복권(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중 어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 나.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 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 라.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 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의 발행·판매는 복권위원회가 선정한 수탁사업자가 복권을 발행하고, 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수탁사업자와 계약한 복권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구조임.

최근 영리 목적으로 해외복권을 대리 구매해 주는 등 유사행위가 발생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온라인복권(로또)의 구매 대행 행위²⁾ 외에는 국내·외 복권 구매 중개 등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여 복권산업의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우선, 동 개정안은 복권 관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임.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제6조제4항을 통해 ‘온라인복권(로또)’의 구매 대행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로또 이외의 인쇄·전자복권이나 ‘해외 복권 구매 대행’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특히, 영리 목적의 해외 복권 구매 대행업체들이 당첨금 미지급, 개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④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형법」상 복표발매중개죄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는 만큼³⁾⁴⁾, 로또 외 복권의 구매 중개·대리 행위도 불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법 제34조제1항의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도2950 판결) 등 처벌사례 있음. 해외복권의 경우 ‘국내법령’에 의해서 발행된 복권이 아니므로 「형법」 제248조제1항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248조제2항의 ‘복표발매중개죄’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았음.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국내 복권의 구매대행에 의한 피해사례가 접수된 건은 없음.

- 4) 「형법」상 ‘복표’는 「복권법」의 ‘복권’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임

* 복표(福票): 번호나 그림 따위의 특정 표시를 기입한 표(票). 추첨 따위를 통하여 일치하는 표에 대해서 상금이나 상품을 줌.(네이버 사전)

대법원은 복표의 개념요소를 “① 특정한 표찰일 것, ②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③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벌칙 부과 조항]

조항	금지 행위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4조①	복권위원회 및 (재)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복권 발행행위	<제1항> <u>3년</u> 이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 벌금	<제1항> <u>7년</u> 이하 징역 또는 <u>7천만원</u> 이하 벌금
제5조의2 ①	수탁사업자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		
제5조의2 ②	수탁사업자의 직원 등이 복권을 구매·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u>안</u> 제5조의3	<u>영리 목적으로 국내·외 발행 복권 구매를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신설)</u>		
제10조	복권사업자 등이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	<제2항·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제3항> <u>(현행과 같음)</u>
제5조 ①	영리 목적으로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		
제6조 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의 영리목적 온라인복권 판매		
제6조②	(재)수탁사업자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판매자와 계약한 (재)수탁사업자		
제6조③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제6조④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한 자		
제6조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의 영리목적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한 자		
제12조②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복권업무를 재위탁한 수탁사업자		

※ 형벌이 아닌 과태료(복권법 제36조) 내용 미포함

복권위원회 및 (재)수탁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의 복권 발행(제4조제1항)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은 유사한 사행산업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토)의 불법

발행 처벌 수위⁵⁾와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복권 구매 중개·대리 행위(안 제5조의3)나 수탁사업자 직원의 정보 누설(제5조의2제1항) 등 상대적으로 법익 침해의 정도가 다른 행위들까지 모두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를 강조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복권법과 타 법의 유사조항 비교]

법령	조항	금지 행위	벌칙
복권법	제4조①	복권위원회 및 (재)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복권 발행행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u>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u>
	제5조의2 ①	수탁사업자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	
	제5조의2 ②	수탁사업자의 직원 등이 복권을 구매·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u>안 제5조의3</u>	<u>영리 목적으로 국내·외 발행 복권 구매를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신설)</u>	
형법	제248조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48조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48조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	1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①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제26조 ②1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제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6조 ②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6조 ②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5)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예를 들어, 「형법」 제248조제2항은 복표발매 중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⁶⁾, 「국민체육진흥법」 역시 유사 투표권의 구매 중개 및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⁷⁾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외 복권 구매 중개·대리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처벌 수위는 타 사행산업 법령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임.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 관련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⁸⁾을 감안할 때, 수탁사업자 직원 등의 복권 정보 누설이나 알선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타법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위반 행위의 성격, 질서 파괴 정도 및 사회적 위해성에 따라 벌칙 체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 벌칙의 비례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도 복권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외 복권 구매의 중개 또는 대리 행위의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안의 벌칙 수준이 타법과 비교하여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 설></u> ②·③ (생략)	<u>제5조의3(유사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34조(벌칙) ① ----- -----<u>7년</u>----- -----<u>7천만원</u>-----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5조의3을 위반하여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u> ②·③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3

참고 1

복권의 종류 및 상품

복권종류		상품명	구매장소
온라인복권		로또6/45	수탁사업자와 판매점 계약(취약계층 우선 계약)을 체결한 로또 단말기가 설치된 판매점 및 인터넷(수탁사업자 공식 홈페이지) ※ 판매권 제한(취약계층 우선) ⁹⁾
결합복권		연금복권720+	복권방, 슈퍼, 편의점 등 복권 판매점 및 인터넷(수탁사업자 공식 홈페이지) ※ 수탁사업자와 협의 후 판매 가능
인쇄복권(즉석식)		스피또2000	복권방, 슈퍼, 편의점 등 복권판매점 ※ 수탁사업자와 협의 후 판매 가능
		스피또2000	
		스피또500	
전자복권 (인터넷복권)	추첨식	스피드키노	인터넷(수탁사업자 공식 홈페이지)
		메가빙고	
		파워볼	
	즉석식	트리플렉	
		트레저헌터	
		더블잭	
		마이더스	
		캐치미	

자료: 복권위원회 및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